

# 평생교육원 규정

제정 1996. 10. 12. 개정 2001. 9. 1.  
전문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  
개정 2015. 1. 23. 개정 2015. 3. 31.  
개정 2016. 11. 9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교육목적)** 본원은 우리 대학의 평생교육 이념에 기초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국민생활의 질을 제고하고, 21세기에 적합한 전인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1.23.>

**제3조(위치)** 본원은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 1길 65 대경대학교(캠퍼스)내에 두고 필요시 분원을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.

**제3조의2(사업)** 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교육·비정규교육·학교 외 교육·연수교육·봉사교육·위탁교육·과건교육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한다. <신설 2013.7.1.>

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(원장)** ① 본원에는 원장을 두며, 원장은 전임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.7.1.>

② 원장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5조(부원장)** ① 본원은 필요시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.7.1.>

② 부원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신설 2015.1.23.>

③ 부원장은 원장 유고시 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5.1.23.>

**제6조(전임교원)** ① 원장은 평생교육원 사업에 필요할 경우 전임교원을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5.1.23.>

② 원장이 지정한 평생교육원 사업에 참여한 전임교원은 산학협력처장과 교학처장이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. <개정 2015.1.23.>

**제7조(교직원)** ① 본원은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과 조교 및 외부인사를 둔다. <개정 2015.1.23., 2015.3.31.>

② 제3조의2 및 제26조 2에 따라 부속시설 및 사업별로 교직원을 각 2명 이상 둔다. <신설 2013.7.1.> <개정 2015.3.31.>

③ 교원은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교육생 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<신설 2015.1.23.>

④ 직원은 교육원의 교무·학사 및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. <신설 2015.1.23.>

⑤ 본원은 행정실장, 교육실장, 특화학교실장을 둔다. <신설 2015.3.31.>, <개정 2016.11.9.>

⑥ 행정실장과 교육실장은 교직원(겸임교수 포함)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특화학교실장은 외부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. <신설 2015.3.31.>, <개정 2016.11.3>

#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 8조 (구성)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 <개정 2013.7.1., 2015.1.23.>

**제9조(임기)**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10조(기능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삭제 <2013.7.1.>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삭제 <2013.7.1.>
4. 삭제 <2013.7.1.>
5.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11조(의결)**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# 제 4 장 교육과정

**제12조(교육과정)** 교육원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일반사회인의 평생교육 및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는

일반교육과정과 특별교육과정을 둔다. <개정 2015.1.23.>

1. 일반교육과정은 평생교육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 <신설 2015.1.23.>
2. 특별교육과정은 정부 및 자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 <신설 2015.1.23.>
3. 삭제 <2013.7.1.>
4. 삭제 <2013.7.1.>

**제13조(학습기간)**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원장이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  
<개정 2013.7.1.>

**제14조(학습일수)**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15조(지원자격)**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원장은 필요에 따라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16조(선발방법)**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교육과정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7조(교육과정 등)** 본원의 교육과정과 학습인원 및 학습비 등은 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18조(학습비)** ① 본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반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9조(수료 및 수료증교부)**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의 교과목(강좌 등)을 70%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**제20조(자치회)**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둘 수 있다.

**제21조(학습자 활동의 금지 등)** 학습자는 본 원 학습기간 동안 학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행동,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**제22조(포상)** 학습태도와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회계

**제23조(회계연도)** 본원의 회계연도는 대경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24조(예산편성)** 원장은 매년 12월 중에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25조(수입원)** 본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학습비
2. 대경대학교 보조금
3. 각종 위탁훈련지원금(위탁훈련 시)
4. 기타 수입

**제26조(회계집행)**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하며, 본원 사정에 따라 특별 회계를 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26조의2(부속시설)** ① 본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본원 산하 부속시설을 둘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원장이 책임자를 임명한다. <신설 2013.7.1.>

② 부속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책임자 및 담당자를 둔다. <신설 2013.7.1.>

③ 부속시설로는 특화학교, 방과 후 학교, 성인대안학교 등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13.7.1.> <개정 2015.1.22., 2015.3.31., 2016.11.9.>

#### 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준용규정) 학기, 휴업일 등 그밖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경대학 원칙을 준용한다.

③ (세칙의 제정)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